

李相佰先生과 韓國社會史 研究

愼 鏞 廈*

一. 머리 말

想白 李相佰 선생님은 그의 학문적 생애를 통하여 社會學과 歷史學의 두 분야에서 많은 先驅的 業績을 남기셨다.

想白 선생님의 10周忌를 맞이하여 선생님을 追慕하면서 그의 제자의 하나로서 외람되나마 想白 선생께서 韓國社會史분야에 남기신 業績의 대강을 간단히 적으려고 한다.

想白 선생께서 韓國社會史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시기 시작한 1930년대는 아직 韓國社會史라는 연구영역 자체가 확립되기 이전이며, 社會學과 歷史學의 協同研究나 韓國史에 대한 社會學的 研究의 시도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이었다. 따라서 想白 선생께서 발표하신 연구논문들은 그 자체가 바로 韓國社會史 創建의 작업이 된 것이었다.

想白 선생의 韓國社會史 研究의 주요 관심은 크게 나누어 세 분야가 중심이 되어 있다. 즉 ① 田制改革 문제 ② 身分制度 문제 ③ 家族制度와 婚姻制度 문제가 그것이다.

다음에서 차례로 이 세 분야에서의 想白 선생의 연구업적의 요점을 간단히 해설하기로 한다.

二. 田制改革 문제

이 분야의 연구논문으로서는 「李朝建國의 研究——李朝의 建國과 田

* 서울大 社會科學大學 副教授(社會學)

制改革問題——」(韓國文化叢書 第9輯, 1949. 乙酉文化社)안에 〈高麗末期의 政爭과 田制改革運動과의 關係〉〈高麗末期의 田制改革運動과 李成桂와의 關係〉〈李成桂派의 田制改革運動과 그 實績〉등의 귀중한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想白 선생의 社會史的 觀點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想白 선생은 朝鮮王朝 建國을 李成桂「個人」에게 집중시켜 고찰하지 않고「社會勢力」 또는「社會集團」사이의 政權의 交替로 보고 있다. 李成桂 자신은 高麗王朝를 廢止하거나 그 자신이 스스로 새 王朝를 세워 등극할 野心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李成桂는 개인적 성격이 淳朴質厚해서 政爭의 智略이나 權謀術數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鄭道傳·趙浚·李芳遠등을 중심으로 한「革新的 小政治集團」또는「新進社會勢力」이(倭寇討伐의 성공으로)民族的 英雄이 되어 있는 李成桂를 그들의「小集團」안에 포섭하고 대표로 추대하여 결국 政權交替까지 추진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朝鮮王朝建國을 동질의 易姓革命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革新的 新進社會勢力의 集團의 政治運動에 의한 變革으로 고찰하는 곳에 想白 선생의 社會學的 觀點이 깊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李成桂가 鄭道傳등 新進社會勢力의 포섭과 추대를 승인하게 된 기본적 動機는 新進社會勢力의 田制改革運動에 대한 李成桂의 共鳴에 있었다고 한다. 武人으로서의 李成桂가 田制改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는 軍糧不足에 부딪쳐 그 배경의 원인이 田制의 紊亂에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그의 田制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어 모든 國政의 病弊와 紊亂의 배경에 權門豪族들에 의한 公田의 私占化의 弊害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는 私田弊害에 대하여 이를 분개하고 개탄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지인 咸鏡道에는 私田과 私田弊害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中央의 松都 부근과 南部의 私田弊害는 그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보이며 田制改革에 대

해서는 李成桂 자신이 큰 熱意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田制改革運動이 新進社會勢力의 政治集團化의 動因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세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新進社會勢力의 改革運動의 처음의 목표는 뚜렷하게 田制改革運動이었으며, 이것이 나아가서 政權(王朝) 交替運動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朝鮮王朝建國의 이념은 革新的인 것이었으며, 王朝交替와 田制改革運動과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朝鮮王朝建國의 동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李成桂派의 田制改革運動을 분석하여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네째, 이러한 관점에서 想白 선생은 恭讓王 3년(1391년)에 李成桂가 都評議使司가 되어 시행한 新進社會勢力의 田制改革(科田法改革)의 성과를 매우 실증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다. 想白 선생에 의하면, 李成桂一派의 田制改革運動의 實績은 그들의 원래의 理想인 公田制 確立의 목표는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들의 田制改革은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여 私田의 일부를 남겨 두게 되었으며, 王朝交替 후에 이를 功臣田·別賜田등으로 分給해 주는 모순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田制改革案에서는 私田이 될 수 없고 퇴관후에는 나라에 환급되어야 하는 科田·軍田도 세습화해서 私田化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를 묵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想白 선생은 그 근본적 이유로서, ① 李成桂를 추대한 少壯新進勢力이 이미 土地私占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그들의 既得權益을 박탈할 수 없었다는 점, ② 李成桂를 추대한 新進社會勢力이 자기들의 身分을 「兩班」「士族」으로서 본격적으로 世襲身分化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兩班身分 유지를 위한 社會經濟的 기초로서의 土地私占의 특권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③ 변방의 一武人이 中央政界에 진출하여 王朝까지 交替시켰으므로 아직도 地方豪族勢力에 대한 기반이 약하여 이들을 회유할 필요가 절실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반항하지 않는 地方豪族에 대해서는 軍田의 世襲化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

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社會學的 觀點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朝鮮王朝建國 과정에서의 身分制度和 田制改革運動 사이의 制度的 모순을 지적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身分制度는 兩班身分과 그 世襲을 인정하고, 田制改革은 公田制를 확립하여 世襲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두제도 사이에 모순이 생기어 결국 身分制度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또는 田制改革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想白 선생은 그들이 功臣의 特權(功臣田分給 등)과 身分制度를 인정한 이상 田制改革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추세로 향하였음을 지적하고 그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想白 선생의 이 분야의 연구는 고전적 업적이 되어 이미 그 대부분이 통사에 채택되고 흡수되었다.

三. 身分制度 문제

이 분야에 대한 想白 선생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특수한 身分問題인 ① 庶孽差別制度 문제와 ② 奴婢制度 문제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想白 선생은 朝鮮王朝初期의 身分制를 ① 兩班 ② 良人 ③ 賤民(奴婢기타)의 3身分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兩班은 朝鮮王朝의 政治를 담당한 支配身分이요, 良人は 李朝國家의 實役을 담당한 기본 신분층으로서 兩班에 대해서는 常人이라고 부르고 賤民에 대해서는 良人이라고 불리었던 身分層이며, 賤民은 주로 奴婢로 구성된 被支配身分으로 보고 있다. 그 후 庶孽差別制度의 형성으로 16세기부터 庶孽層이 하나의 신분층으로 범주화됨을 계기로 하여 中人이라고 하는 새로운 身分層이 대두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想白 선생은 16세기 이후의 朝鮮王朝의 身分制는 ① 兩班 ② 中人 ③ 良人 ④ 賤人의 4身分으로 分化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7) 庶孽差別制度

먼저 庶孽差別制度에 대한 연구논문으로서는 <庶孽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震檀學報』第1號, 1934, 『朝鮮文化史研究論叢』韓國文化史研究叢書第2輯 1948, 『乙酉文化社 所收』), <庶孽禁錮始末>(『東方學志』第1輯, 1954), <七庶之獄>(『李丙燾博士回甲記念論叢』 1965) 등의 고전이 된 귀중한 논문들이 있다. 이 논문들에서 想白 선생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身分制度의 하나인 庶孽差別制度가 시작된 것은 太宗朝에 徐選이 王家內의 庶出에 대한 統制와 士大夫內의 庶出의 社會的 進出을 견제하기 위한(예컨대, 鄭道傳이 庶出이므로 이를 규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徐選 一個人의 의사라기보다는 당시의 儒生들과 兩班身分層의 社會的 霧圍氣를 대변한 것이었다고 본다. 즉 徐選이 이것을 건의했을 때의 사회적 상태는 李朝國家가 그 建國期의 組構를 마치고 여러가지 制度가 점차 실질적인 建設期로 들어가는 때이어서, 身分制度에 있어서도 貴賤의 身分差別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支配身分의 意識이 더욱 농후한 시대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兩班支配身分層 內部에서 貴賤의 身分差別意識이 強化되는 社會的 霧圍氣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둘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庶孽差待가 완전히 制度化되기 시작한 것은 成宗朝에 『經國大典』에서 「庶孽子孫은 文武科 및 生員·進士試에 赴함을 許하지 않는다」고 法制化한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庶孽禁錮法」의 제정인데, 이것은 물론 庶孽子孫으로 하여금 官路를 閉塞한 것은 아니고 『經國大典』 吏典의 「限品叙用條에서 特別任用을 규정하여 사례별로 正五品까지의 限品叙用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制度的으로는 庶孽差別을 완전히 社會制度化하고 庶孽出身의 任官에의 進出에 근본적인 社會的 制限을 가한 극히 전환적인 것이었다.

셋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이른바 「庶孽禁錮法」이 한번 제정되자 그

사회적 영향은 매우 심대해서, 庶孽子孫들의 社會身分的 地位는 급속히 凋落하여 기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즉 庶孽子孫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士大夫層에 同一視하였으나, 嫡子의 兩班들은 그들을 士族 속에 넣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中人」이라고 부를 수 있는 身分層으로 범주화 되었으나 실제의 社會的 賤待는 그 이하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家族制度 내부에 있어서까지도 士大夫들은 嫡子が 없고 庶子は 있는 경우에 家系를 庶子에게 相續시키지 않고 반드시 「養子」를 들이어 家系를 相續시키는 제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내째, 이러한 庶孽差別制度가 확립된 原因에 대하여 想白 선생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1) 우선 儒敎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인 身分思想이 우리나라 傳統社會에서는 일종의 「貴賤思想」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儒敎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아 從的 身分秩序에 대한 觀念이 強化되면서, 儒敎의 이데올로기와 形式을 추종해서 이것을 庶孽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2) 다음은 感情的 요소로서 戊午士禍의 主動者에 대한 士大夫層의 感情的 反作用이 지적되고 있다. 즉 燕山朝의 戊午士禍의 主動者인 柳子光이 庶子出身이었던 점이 당시와 그 직후 儒林社會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당시와 그후 庶孽禁錮 주장자들에게 유력한 口實을 제공해 주고, 이 庶孽禁錮法의 勵行을 역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그것을 엄중히 할 필요성을 통감하게 하였다고 한다. 후세에 「庶孽禁錮」를 가장 강경히 주장하는 儒林의 感情的 근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3) 다음은 士大夫層의 官職에 대한 獨占의 慾求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당시 制限된 數의 官職(특히 高位官職)을 士大夫의 嫡子들이 獨占하려는 욕구가 庶孽禁錮法 제정의 社會的 背景이 되었으며, 일단 이 庶孽禁錮法이 만들어지자 이 禁錮法의 존재 자체가 士大夫의 官職獨占

을 위하여 士大夫들로 하여금 庶孽出身을 사회적으로 더욱 虐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高位官職을 가진 權門豪族이라도 만약 家系의 相續을 庶子가 계승하게 되면 그 家門은 永久이 官祿과 勢道로부터 떨어지게 되므로 庶子の 立後를 극도로 혐오 기피하고 庶孽差別을 더욱 強化하게 되었다고 하며, 想白 선생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섯째, 想白 선생은 당시 士大夫層의 蓄妾制度가 普遍化되어 있어서 庶孽層이 하나의 身分層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社會勢力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庶孽差別制度는 강력한 反抗에 부딪혔음을 지적하고 그 反抗運動을 분석하였다. 그는 庶孽差別에 대한 反抗運動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① 庶孽差別廢止上疏運動
- ② 政變謀議・政權掌握運動
- ③ 友人의 힘을 빌린 社會進出運動
- ④ 身分을 隱匿한 科擧應試
- ⑤ 戰時의 戰功 또는 軍糧・軍費를 부담한 功으로써의 士大夫身分의 獲得
- ⑥ 黨爭에 가담하는 方法에 의한 權勢獲得

想白 선생의 연구논문 중에서 〈七庶之獄〉은 庶出인 朴應犀등 7名이 중심이 되어 庶孽差別制度에 不滿을 품고 光海君 5년(1613년)에 「政變」을 謀議했다가 발각됨으로써, 光海君이 王弟인 永昌大君 이하 관련자를 誅殺하고 母妃를 廢하여 黜處한 사건을 밝힌 논문이다. 仁祖反正의 名分의 하나가 殺弟廢母이었으므로, 이것은 政治的 事件으로서도 큰 사건이었음을 지적하여, 朝鮮王朝時代의 庶孽差別制度의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다.

여섯째, 想白 선생은 한편 儒生들은 庶孽許通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庶孽許通이 주장될 때마다, 儒

生들은 주로 上疏運動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수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純祖 23년(1823년)의 金熙鏞등 六道儒生의 萬人疏가 지적되고 있다.

일곱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조선왕조의 中·後期에 오면 庶孽子孫의 數는 嫡子子孫의 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數적으로 增加되었을 뿐 아니라, 庶孽出身으로서 뛰어난 人材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庶孽差別制度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社會問題로 제기되었다고 한다.

朝鮮王朝 前期의 庶孽出身의 뛰어난 人物로서는, 道學에 宋翼弼·李伯虎·金謹恭, 行誼에 朴枝華·李大純·曹伸, 文章에 魚無迹·魚淑權·楊士彥·李達·辛喜季·梁大樸·朴澆, 才諳에 柳時詒·崔命龍·柳時蕃, 義忠에 李山謙·洪李男·權應洙·洪霖등을 들고 있다.

또한 朝鮮王朝 後期の 庶孽出身의 뛰어난 人物로서는, 특히 朴齊家·李德懋·柳得恭·徐理修·李集箕·金箕南·徐有年·成大中·吳正根 등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庶孽出身으로서 뜻과 能力이 쓰이지 못한 뛰어난 人物이 물론 不知其數이었으며, 이것은 社會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損失을 가져온 것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여덟째, 문제의 성격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庶孽差別制度를 廢止하고 庶孽許通을 주장하는 위로부터의 改革運動이 전개되었다. 想白 선생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다음의 사례를 특히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1) 李珥의 許通主張

李珥는 宣祖 36년(1583년)에 女眞의 침입이 있자, 兵曹判書의 직을 맡고, 이때 庶孽出身도 이들을 登科시키어 叙用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李珥의 이러한 주장은 朝臣會議에서 反對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풍같은 반대운동·비난·중상이 일어났다. 즉 李珥가 그의 庶子를 위하여 이를 도모했다는 비난과 중상이 있었다.

(2) 李秀得의 「通塞問答」

英祖 45년(1769년)에 司直 李秀得이 庶孽通用을 주장하는 上疏를 하고, 「通塞問答」이라는 冊子를 지어 올리었다. 그러나 李秀得의 上疏는 手續未備라고(家僮을 시켜 直呈하였다고) 承政院에서 却下되었으며, 그의 冊子는 英祖는 설득시켰으나 朝臣들의 反對에 부딪쳐 實行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英祖는 許通淸顯하여, 종래 庶子가 공식적으로 그 父를 「父」라고 호칭하지 못하던 것을 稱父하도록 繪晉을 내리고, 庶孽에 대하여 큰 同情을 갖게 되었다.

(3) 正祖의 「丁酉節目」

正祖는 그 즉위 元年(丁酉—1777년)에 朝臣들에게 승을 내리어 庶孽出身을 降一等하여 通用하도록 하는 節目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 이에 吏曹判書 鄭弘淳, 兵曹判書 李徽之, 禮曹判書 洪樂性등이 庶孽通用을 部分的으로 許諾하는 「丁酉節目」을 만들었다. 그러나 王은 열심인 반면에 朝臣들이 소극적이어서 큰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丁酉節目」으로 庶孽에 대한 差別이 한 때 크게 완화되었다.

(4) 朴趾源의 「擬請疏通疏」

朴趾源은 上疏와 論說들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庶孽許通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擬請疏通疏」는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5) 孝明世子の 許通主張

純祖 27년(1827년)에 孝明世子가 大政을 代理하게 되자, 庶孽疏通에 관한 승을 내려서 庶孽差別制度를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나 孝明이 즉위하지 못하고 病沒하게 되자 이 改革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아홉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이러한 庶孽差別制度는 正祖執政 이후에 현저히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制度의 完全한 廢止는 이루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결국 1894년의 甲午更張 때 軍國機務處의 案에 「嫡庶差別廢止」를 넣어 공포함으로서 制度 그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想白 선생은 庶孽層 자신들과 一部 改革家들이 庶孽差別制度廢止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午更張 이전까지 成功을 얻지 못한 원인을 그들의 運動의 方向에서 구하고 있다. 즉 庶孽層의 身分差別制度廢止運動은 兩班의 特權의 分配를 요구하고, 인접한 兩班身分의 社會的 政治的 權利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庶孽層이 상실한 仕官의 權利 기타 사회적 권리를 다시 획득하려고 하고, 그들의 不滿한 權利를 擴大하려고 기도하고 투쟁하였으나, 결국 兩班制度라는 身分制度 그 자체를 문제로하지 않았다.

想白 선생은 그들의 운동의 무엇보다도 큰 취약점은 그들이 奴婢制度의 廢止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은 사실에 있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庶孽差別制度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社會制度는 바로 奴婢制度로서 母系의 賤民身分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바로 이 奴婢制度를 廢止하면 庶孽差別制度를 거의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奴婢制度를 그대로 둔채 庶孽差別制度만 폐지하여 兩班身分으로 上昇하려 하였으므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甲午更張을 기다려 奴婢制度가 廢止될 때 庶孽差別制度도 함께 폐지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L) 奴婢制度

다음 奴婢制度에 대한 대표적 연구논문으로서는 <「賤者隨母」考>〔震檀學報〕第26. 27. 27合併號, 1964)가 있다. 이 논문에서 想白 선생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想白 선생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奴婢 發生의 起源으로서, ① 戰爭捕虜 ② 貨買 ③ 叛逆者의 妻孥 ④ 壓良 ⑤ 盜賊의 妻子등을 들 수 있으나, 高麗朝社會 이후에 한정시켜 볼 때에는 ① 出生(奴婢間의 所生) ② 抑良(良人을 賤人으로 編入하는 것) ③ 投托(良人이 자진하여 上級身分의 賤役に 服하는 것) 등이라고 보고, 이 중에서도 出生과 抑良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想白 선생은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出生」의 요인이 라고 보았다. 이 문제도 賤人男女 간의 所生의 身分歸屬은 自明하여 法律的으로나 慣習的으로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간주되어 왔지만, 良賤 間의 交婚에 의한 所生의 身分歸屬은 큰 문제점과 쟁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구명하였다.

想白 선생에 의하면, 우리나라 傳統社會의 奴婢法은 良人과 奴婢 사이의 子女의 良·賤 身分을 분간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苛酷性을 보이었다고 한다.

둘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高麗 靖宗 5년(1039년)에 이른바 「賤者 隨母之法」을 제정하여, 賤女出生의 모든 子女를 奴婢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의 사회상태로서는 이른바 良賤交婚에 대해서 奴娶良女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良娶賤女만이 인정되고 있었으므로, 良賤交婚의 所生은 모두 奴婢로 되어, 奴婢의 再生産이 擴大되었다.

즉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一賤則賤」「有入無出」의 가혹한 노비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

셋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그러나 李朝建國期에 國政全般의 改革을 추진할 때에 新進社會勢力의 집권층은 奴婢層의 호소를 무시하지 못하여 太宗 5년(1405년)에 「從父爲良」을 허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良賤交婚의 所生 일부가 良人身分으로 身分上昇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朝鮮王朝前期에는 賤娶良女가 매우 盛行하여 있었으므로 「從父爲良」은 이 경우에는 그 所生者로 하여금 良人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李珣를 비롯한 다수의 改革家들은 「從母從良」할 것도 주장하여, 「一良則良」이 되도록 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네째, 이러한 改革運動은 때때로 받아들여 지기도 하였으나, 朝廷의 政策未定으로 갈팡지팡 하였다.

한 사례를 보면, 公私賤의 良妻所生은 :

① 顯宗 10년 이전은 賤人이 되고,

- ② 顯宗 10년에서 肅宗元년까지의 7년간은 良人이 되고,
- ③ 肅宗元년에서 肅宗 7년까지의 7년간은 賤人이 되고,
- ④ 肅宗 7년에서 肅宗 15년까지의 15년간은 良人이 되고,
- ⑤ 肅宗 15년에서 英祖 6년까지의 42년간은 賤人이 되고,
- ⑥ 英祖 7년 1월 1일 이후의 所生은 良人이 되었다.

결국 英祖 7년(1731년)부터 「一良則良」의 법이 확정되어 실시되게 된 것이었다.

다섯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그러나 이 시대의 社會實相을 보면 奴婢制度는 실제로 급격히 崩壞되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壬辰倭亂 이후에는 逃亡奴婢가 속출하였으나, 그 推刷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奴婢身分이라는 것도 歲貢을 받치는 부담으로 점차 變質되어 가고 人身的 束縛은 현저히 弱化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마침내 純祖元년(1801년)에 公奴婢의 革罷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高宗 23년(1886년)에 이에 대한 改革을 가하여 私奴婢에 대해서는 奴婢의 使役은 當者一身에 限하고 그 世役을 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奴婢制度는 제도로서 엄연히 인정되어 관행되고 있었으므로, 1894년 甲午更張때에 마침내 奴婢制度를 完全히 革罷하게 된 것이었다.

四. 家族制度와 婚姻制度 문제

이 분야의 대한 대표적 연구논문으로서는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對한 研究>(「東洋思想研究」第1號, 1937. 「朝鮮文化史研究論攷」韓國文化叢書 第2輯, 1948 乙酉文化社 所收)가 있다. 이 주제는 儒敎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社會制度로서 制度化되도록까지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힌 면에서도 매우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想白 선생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高麗末期까지에는 早婚制度는 있었으나 寡婦再嫁禁止制度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때에는 寡婦의 再嫁·三嫁는 자유로이 허용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儒敎가 들어와 세력을 갖게 되자 恭讓王 元년(1389년)에 判事 이하로부터 六品の 妻는 夫亡三年까지는 再嫁를 禁하고 自願守節者는 포상을 하자는 上啓가 있었던 정도이었다고 한다.

둘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太宗 6년(1406년)에 大司憲 許應등이 時務七條를 上啓하였을 때에 그 一條로 一婦가 三嫁를 했을 때에는 이를 恣女로 간주하기로 하자고 제안하여 이것이 채택된 것이 寡婦再嫁禁止의 효시이다.

이 立法의 취지는 儒敎思想을 社會制度로 채용하려는데 있었다. 經濟六典 그 자체의 성격을 고찰하여 보면, 당시 새로운 王朝를 건설한 新進氣銳의 儒士들이 儒敎的 理想을 좇아 文化를 一新하고 새 制度를 확립하려는 운동의 특성이 강하였다. 그 중에는 朝鮮固有의 慣習을 기초로 한 것도 적지 않으나, 많은 부분이 당시 지배적으로 대두하던 儒敎의 이데올로기와 형식을 모방하여 社會의 現實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法令을 制定하고 強行하는 일이 매우 많았다. 그 한 예로써, 家廟를 士大夫로부터 庶民에 이르기까지 各戶에 강제로 세우게 하고 위반자는 「不孝之罪」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成功한 事例가 寡婦再嫁禁止制度인 것이다.

셋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처음에는 太宗 6년(1406년)에 寡婦「三嫁」를 禁止하기로 하고 그 施行에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 制度는 당시 社會實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 한 사례로, 60년 후인 世祖 14년(1468년)에 左叅贊 金漑의 母가 三嫁의 失이 있다 하여 金漑가 廟堂에 서는 것이 不可하다고 司憲府에서 탄핵하였는데, 世祖는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金漑는 더욱 昇進하고 府院君까지 되었다.

이것은 당시 寡婦三嫁禁止가 儒士들의 理想에 불과하였지 社會慣習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다가 成宗朝 때에 成宗 자신이 儒敎에 심취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王은 成宗 16년(1485년)에 新進士類들의 極端論을 받아들여 寡婦再嫁禁止를 社會慣習化하기 위해서 「再嫁婦女의 子孫의 赴科를 禁한다」는 禁錮條項을 만들었다.

네째, 想白 선생에 의하면, 이러한 「再嫁婦女의 子孫의 赴科를 禁한다」는 禁錮條項은 「經國大典」에 편입되어 그후 계속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그냥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子孫으로 하여금 科擧에 應試치 못하게 한다는 조항 때문에 이 法令이 社會慣習化 되었다고 한다.

당시 科擧는 官職을 구하는 가장 정당한 合法的 通路이었을 뿐 아니라, 科擧에 應試하는 그 자체가 「威身」을 上昇시키는 것이므로, 科擧 應試의 禁止는 士大夫層의 가장 중요한 急所를 찌른 것이었다. 이 禁錮條項으로 말미암아, 士大夫層들은 자발적으로 寡婦再嫁를 엄격히 禁止하여 兩班社會의 慣習으로 習俗化하여갔으며, 常民層은 이를 實行하지는 않았으나 價値觀으로서는 寡婦再嫁를 婦德을 잃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째, 想白 선생은 寡婦再嫁禁止의 社會慣習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한 후에, 魚淑權·李瀾등이 이 制度의 연원을 男女人口의 構成比에 있어 女性人口의 男性人口에 대한 비율의 多數에서 구하는 학설을 비판하였다.

또한 想白 선생은 이 寡婦再嫁禁止 制度가 당시의 13,4세의 早婚制度를 고려하면 早寡에게는 얼마나 苛酷한 制度이며 가혹한 社會慣習이 있는가를 추궁하고, 이러한 제도를 東方의 美風良俗이라고 자랑한 儒學者들을 비판하였다.

想白 선생은 儒敎의 발상지인 中國에도 없는 이러한 가혹한 社會慣

習이 성립된 것은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의 儒敎가 禮學中心으로 다분히 形式主義에 기울어져서 이데올로기에 더욱 嚴格性和 硬直性を 띤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다.

寡婦再嫁禁止制度는 東學農民革命 때 그들의 弊政改革要求 안에 포함됨으로써, 甲午更張 때 마침내 廢止되기에 이른 것이다.

五. 맺 음 말

지금까지 간단히 해설한 ① 土地制度 ② 身分制度(특히 庶孽差別制度和 奴婢制度) ③ 家族制度和 婚婚制度 분야에서의 想白 선생의 연구 업적은 이 분야의 연구를 先驅적으로 처음 開拓한 업적으로서 그 자체가 「韓國社會史」라는 연구분야를 개척하여 창건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모두 古典的 業績이 되어 通史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 후의 이 분야의 모든 연구에 基礎가 되기에 이르렀다.

想白 李相佰 선생은 바로 「韓國社會史」의 創建者의 가장 중요한 한 분인 것이다.

이 밖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想白 선생의 중요한 연구논문으로서, 〈儒佛兩敎交代의 機緣에 關한 一研究〉(「東洋思想研究」第2~3號, 1939), 〈三峰人物考〉(「震檀學報」第2~3號, 1935), 〈禍昌非王說에 대하여〉(「東洋社會紀要」第3號, 1938), 〈圓覺寺의 始末考〉(「鄉土서울」第2號, 1958), 〈圓覺寺와 撐樂院〉(「鄉土서울」第4號, 1958), 〈東學黨과 大院君〉(「歷史學報」第17, 18合輯, 1962)등에 대해서는 그 社會史的 측면을 다른 기회에 해설하려고 한다.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副敎授)